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제19963호, 2007. 3. 27공포, 2007. 4. 5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의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사서자격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1. 사서자격 교육과정(제4조제2항 관련)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필 수 과 목	선 택 과 목
1급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제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비교저작권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선택
2급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Ⅱ)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Ⅱ) 도서관자동화론 독서지도론(Ⅱ) 저작권론(Ⅱ)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서 선택
준사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Ⅰ)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Ⅰ) 독서지도론(Ⅰ) 저작권론(Ⅰ)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의 교과과정에서 선택

※ 비 고 : 필수과목중(Ⅰ)의 내용은 기초과정, (Ⅱ)내용은 심화과정을 다룬다.

2.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나. 이수학점은 30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

3. 이 고시는 관보게재 일로부터 시행한다.